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김근한 · 김민성 의원 (2인)

다. 찬 성 자: 강승수, 김낙관, 김원섭, 김춘남,
소진혁, 이명희, 이상호,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의원 (10인)

라. 회부일자: 2025년 1월 6일

마. 상정일자: 2025년 1월 14일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근 한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 또는 직원이 의정활동이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신청 및 처리(안 제3조)
- 지원범위(안 제4조)
-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3) 「지방자치법」 제70조
- 예 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재 환

○ 본 조례안은

- 의정활동의 독립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에 대해 개인이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소극적인 의정

활동이나 직무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송비용을 선지급한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수 절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인 사후 점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